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로자 적용기준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 개편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84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근로자 적용기준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 개편	2

I. 제안경위

2025년 8월 5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나 다수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 등은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음.

특히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일자리나 저소득·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구직급여 기준은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어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임금 변동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꾸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근로자 적용기준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 개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을 현행 소정 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변경하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을 현행 평균임금에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해당 사업에서 <u>소정(所定)근로시간</u> 이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시간</u> 미만인 근로자 3. ~ 5. (생략)	제10조(적용 제외)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u>월 보수</u> 가----- ----- <u>정하는 보수</u> ----- -----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 <u>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u> [이하 “ <u>기초일액(基礎日額)</u> ”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u>보수일액</u>) ① <u>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u> [이하 “ <u>기초일액(基礎日額)</u> ”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

런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런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의 하나로 소정근로시간을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정하되,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듯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의 기준으로 삼음으로 인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된다는 문제가 지적됨.

한편 현행 고용보험법 제45조는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¹⁾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어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기준이 되는데²⁾, 이로 인하여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임금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변경하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을 현행 평균임금에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먼저 근로자의 고용보험법 적용기준 변경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짧거나 불규칙한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요컨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

1)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 9. (생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더라도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

다만, 개정안은 적용기준이 되는 보수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기준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 변동 및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구직급여의 산정기준을 1년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³⁾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살펴보면,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개념이 직전 3개월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임금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종전 급여 수준에 맞추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또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1년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⁴⁾, 그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⑧ (생략)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보수액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

는 구직급여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의 정합성이 인정됨.

참고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상으로도 개정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1년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하고 있음⁵⁾.

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④ 삭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5)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② (생략)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또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현행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되어⁶⁾ 보수총액 파악이 수월해질 것이므로, 보수총액을 기초로 구직급여를 산정하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업을 개시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② (생략)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 6)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 3. (생략)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4. (생략)

5.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2026년 1월 1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 시 국세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1년간의 보수총액으로 개편 시 산정기준이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되어 사업주 신고부담이 절감되는 한편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입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